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113
- 발 의 자 : 한기영 의원 (찬성인원 11명)
- 발 의 일 : 2021년 1월 19일
- 회 부 일 : 2021년 2월 9일

2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「지방세법」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 목적 사항에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, 본 조례 중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위임 사항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 위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로 이관 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근거 법령에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을 추가하여 명시함(안 제1조).
- 나. 지방세법 상 주민세 관련 조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(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).
- 다. 「지방세기본법」 위임 사항인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및 공동재

산세 전출금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(안 제26조부터
안 제27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, 「지방세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('20. 2. 16.~2. 23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가.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「지방세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「지방세기본법」에 근거하고 있는 ‘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’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*하려는 것임.
- 현행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간 재정격차의 완화를 목적으로 구 「지방세법*」에 따라 구세(區稅)인 재산세의 50%를 특별시세인 ‘특별시분 재산세’로 징수하여, 본 조례**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하는 제도임.

* **구 지방세법** [시행 2007. 7. 20.] [법률 제8540호, 2007. 7. 20., 일부개정]
제6조의2 (특별시의 관할 구역 안 재산세의 공동과세) ① 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(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제외한다)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“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”로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(區)분 재산세는 각각 제3장제2절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(제188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.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6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제6조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.
[본조신설 2007. 7. 20.]

** 본 규정 시행 2008.1.1., [서울특별시조례 제4577호, 2007.11.1. 일부개정·시행]

- 이후, 2011년에 「지방세법」이 3개의 지방세 관계법(지방세기본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)으로 개편(2011.1.1.)되어, 관련 조례 체계도 마련된바 있음.

< 지방세 관계법 3법 분법(2011.1.1. 시행)에 따른 조례 제·개정 내역 >

상위법령			서울특별시 조례		
당초 (1개법)			분법* (2011.1.1. 시행)		
			당초 (2개 조례)		개정 (2011.1.1. 시행)
지방세법	제1장(총칙)	⇒	지방세기본법	시세조례	시세 기본 조례 (제정)
	제2장(도세)				시세 조례 (전부개정)
	제3장(시군세)	⇒			
	제4장(목적세)		지방세특례제한법		
제5장(과세면제 및 경감)	⇒	시세 감면 조례 (전부개정)			

* 지방세기본법 [시행 2011. 1. 1.] [법률 제10219호, 2010. 3. 31., 제정]
 지방세법 [시행 2011. 1. 1.] [법률 제10221호, 2010. 3. 31., 전부개정]
 지방세특례제한법 [시행 2011. 1. 1.] [법률 제10220호, 2010. 3. 31., 제정]

※ 이후, 「지방세징수법」 또한 분법(시행 2017. 3. 28.) [법률 제14476호, 2016. 12. 27., 제정] 되어 현행 4개의 지방세 관련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.

- 다만, 분법과 동시에 재산세의 공동과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와 관련한 규정이 「지방세기본법」으로 이관 규정되었음에도, 아직까지 「지방세법」을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,
- 본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, 「지방세기본법」 위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로 이관하여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
나. 조문별 세부내용 검토

1) 조례 목적규정에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추가 (안 제1조)

- 안 제1조는 현행 조례 근거 법령으로 ‘ 「지방세법」 등’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을 추가 명시하려는 것으로,
- 본 조례 제12조에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(제85조의4)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바,
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을 목적규정에 포함하여 명확한 근거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「지방세법」 개정 사항 반영 (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)

- 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는 당초 균등분,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,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,
-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5개로 구성된 주민세 세세목을 3개로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세 체계를 개편한 「지방세법」 개정*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* (시행 2021. 1. 1., 법률 제17769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)

< 지방세법 개정(주민세 과세체계 정비) 내용 >

당초	개정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균등분(개인·개인사업자·법인), 재산분,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의 세세목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 rowspan="3">균 등 분</td> <td>개 인</td> </tr> <tr> <td>개인사업자</td> </tr> <tr> <td>법 인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재 산 분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종 업 원 분</td> </tr> </table>	균 등 분	개 인	개인사업자	법 인	재 산 분		종 업 원 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세 :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으로 단순화(3개 세세목)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개 인 분</td> </tr> <tr> <td>사 업 소 분</td> </tr> <tr> <td>종 업 원 분</td> </tr> </table>	개 인 분	사 업 소 분	종 업 원 분
균 등 분		개 인										
		개인사업자										
	법 인											
재 산 분												
종 업 원 분												
개 인 분												
사 업 소 분												
종 업 원 분												

< 주민세 과세체계 정비 주요 내용 >

당 초			개 정		
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	구분	납세의무자	세율체계
균등분 (8월)	개인	1만원 內	개인분(8월)	<좌 동>	
	개인사업자	5만원	사업소분 (8월)	사업자	◦ 모든 사업자: 기본세액(5만원) ◦ 연면적 330㎡ 초과 기본세액+250원/㎡
	법인	5~50만원			
재산분 (7월)	사업자	연면적 330㎡ 초과 250원/㎡	종업원분	<좌 동>	
종업원분	사업자	월급여액×0.5%			

지방세법 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7769호, 2020. 12. 29., 일부개정]

◇주요내용

가.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(제74조부터 제78조까지, 제81조 및 제83조).

- 1) 균등분,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,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,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.
- 2)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고,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상한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함.
- 3)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소분의 납기를 균등분의 납기와 유사하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함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장 주민세	제5장 (현행과 같음)
제1절 균등분	제1절 개인분
제8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8조(세율)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4,800원으로 한다.
1. 개인의 세율	

현 행	개 정 안
<p>가. <u>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</u> 의 세율: 4,800원</p> <p>나. <u>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</u> <u>인의 세율: 법 제78조제1항제1호</u> <u>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>2. <u>법인의 세율: 법 제78조제1항제2호</u> <u>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<u>재산분</u></p> <p>제9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<u>재</u> <u>산분</u>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<u>표준</u> <u>세율</u>을 적용한다.</p> <p>제10조(신고의무) <u>재산분</u>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 축물의 소재지, 지번, 용도, 층수, 건 축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절 <u>사업소분</u></p> <p>제9조(세율)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<u>사</u> <u>업소분</u>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<u>각</u> <u>호</u>의 세율을 적용한다.</p> <p>제10조(신고의무) <u>사업소분</u>의 납세의무 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, 지번, 용도, 층수, 건축물의 연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.</p>

3) 특별시분 재산세 관련 조문 삭제 (안 제9장(안 제26조, 안 제27조))

○ 안 제9장(안 제26조, 안 제27조)은 특별시분 재산세와 관련 규정에 대한 근거 법이 「지방세법」 분법에 의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으로 이관(2011.1.1.)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
- 본 조례에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 위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임 법령 체계에 합당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- 그러나, 재무국은 근거 법령 체계 개편 이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이를 방치하였는바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 적합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4) 기타 (부칙)

- 부칙 안 제1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 하면서, 안 제2조에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반영 사항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였는바,
 -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 시행일(2021.1.1.)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개정 조문의 시행 시기의 공백 기간 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시기를 소급하려는 것임.

지방세법	개정조례안
부칙 <법률 제17769호, 2020.12.29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생략) 제2조 (생략) 제3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제4조 (이하 생략)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에 관한 적용례) 제5장 제1절의 제목, 제8조, 제5장 제2절의 제목, 제9조,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최석훈
------	-----	-------	-----

참고 자료

- 지방세 관련 4개 법령별 위임 조례 현황 -

지방세 관계 법령		위임조례	
법명	목적사항	조례명	목적사항
지방세 기본법	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·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,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		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지방세법	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·징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서울특별시 시세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법」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지방세 징수법	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	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지방세 특례제한법	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